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홈페이지 게시)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합니다!”

세정지원 대상

- '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 *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 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 ① '22사업연도('22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 ② 중소기업 기준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규정 미적용(조특령 § 2②)
- '24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3년 대비 2% · 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이 대상입니다
 -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2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기준비율	2% 이상	3% 이상

- 단, 「근로기준법」 제43의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종업원의 임금을 제불한 사업주 기업으로서 명단이 공개된 법인과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기업은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정지원 내용

- '22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 * 일자리 창출 기준비율 이상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에서 배제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방법 (제출기한 : 2023.11.30일까지)

- 홈택스(법인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 지급명세서 · 자료제출 · 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 · 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내역조회
 - ※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인터넷접수목록 조회] 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참고 1

중소기업 판단 관련규정(조특령 §2①)

① (규모 기준) 업종별 연간 매출액 규모 기준 충족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구분)	규모 기준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매출액 1,5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매출액 80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매출액 6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매출액 400억원 이하

② (자산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③ (독립성 기준)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 것
-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 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 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나.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④ (업종 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 제외)

□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비거주자는 대상이 아니나, 외국인근로자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포함 가능

-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단,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상시근로자 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①은 제외)
-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②는 제외)
-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참고 3

청년등 상시근로자 관련규정[조특령 §27①,②]

□ 청년등 상시근로자

○ 청년, 장애인, 고령자가 해당

- ①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나.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②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③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2021.2.17. 신설)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청년등 상시근로자 제외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②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③ 위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참고 4

일자리창출 비율 계산사례(①)

2023년 상시근로자

○ 전체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51.2	50	50	50	50	51	51	52	52	52	52	52	52
수도권 외	25.9	25	25	25	25	25	27	27	27	27	26	26	26

○ 청년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	20.7	20	20	20	20	21	21	21	21	21	21	21	21

2024년 상시근로자

○ 2024년 채용·퇴사 계획

번호	일정	채용·퇴사	수도권/수도권 외	청년/청년 외	인원
①	2024.3월	채용	수도권 외	청년 외	1명
②	2024.5월	채용	수도권	청년	1명
③	2024.7월	퇴사	수도권	청년 외	1명
④	2024.9월	채용	수도권	청년	1명

○ 전체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52.5	52	52	52	52	53 ^②	53	52	52 ^③	53 ^④	53	53	53
수도권 외	26.8	26	26	27 ^①	27	27	27	27	27	27	27	27	27

○ 청년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	22.0	21	21	21	21	22 ^②	22	22	22	23 ^④	23	23	23

□ 증가비율

- 수도권, 수도권외, 청년등을 구분하여 상시근로자 증감인원 계산

구 분		2023년	2024년	증 감
전 체	계	77.1	79.3	2.2
	수도권	51.2	52.5	1.3
	수도권 외	25.9	26.8	0.9
청년등		20.7	22.0	1.3

- 일반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비율은 5.1%

< 증가비율 계산방법 >

{(수도권 증가인원 + 수도권외 증가인원 + 청년등 증가인원) + (수도권외 증가인원×0.5)} ÷ 2023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 × 100

{(1.3명 + 0.9명 + 1.3명) + (0.9명×0.5)} ÷ 77.1명 × 100 = 5.12%

- 청년창업 · 강소기업의 일자리창출비율은 6.2%

< 증가비율 계산방법 >

{(수도권 증가인원 + 수도권외 증가인원) × 2 + (수도권외 증가인원×0.5)} ÷ 2023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 × 100

{(1.3명 + 0.9명) × 2 + (0.9명×0.5)} ÷ 77.1명 × 100 = 6.29%

- * 청년등 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등 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 요건기준비율

- 일반, 청년창업, 강소기업 등 기준비율 요건 모두 충족

수입금액	기준비율	일반 기업		청년창업 등 기업	
		비율	충족여부	비율	충족여부
~500억원	2%	5.1%	여	6.2%	여
500억원~	3%		여		여

참고 5

일자리창출 비율 계산사례(②)

합병법인

- 합병(수도권 소재)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2023년 상시근로자

- '23.5월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40명을 승계한 경우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		60	60	6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110
피합병		40	40	40	40	-	-	-	-	-	-	-	-
상시근로	67.5	60	60	60	60	60	60	60	80	80	80	80	70

2024년 상시근로자

- '23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40명 제외하여 계산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상시근로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증감비율

구 분	2023년 (①)	2024년 (②)	증 감	
			인 원(③)	비 율(③/①)
상시근로자 수	67.5명	70명	2.5	3.7%

기준비율

수입금액	기준비율	일반 기업	
		비율	충족여부
~500억원	2%	3.7%	여
500억원~	3%		여

참고 6

일자리창출 비율 계산사례[③]

□ 분할법인

- 분할(수도권 소재)의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 2023년 상시근로자(분할존속법인)

- '23.5월 분할된 법인의 분할 전 상시근로자 수를 분할존속 사업 부문 60명, 분할신설 사업부문 40명(청년 등 증가인원 없음)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		100	100	100	100	60	60	60	80	80	80	80	70
분할신설		-	-	-	-	40	40	40	40	40	40	40	40
상시근로	67.5	60	60	60	60	60	60	60	80	80	80	80	70

□ 2024년 상시근로자(분할존속법인)

- '23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40명 제외하여 계산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 증감비율

구 분	2023년 (①)	2024년 (②)	증 감	
			인 원(③)	비 율(③/①)
상시근로자 수	67.5명	70명	2.5	3.7%

□ 기준비율

수입금액	기준비율	일반 기업	
		비율	충족여부
~500억원	2%	3.7%	여
500억원~	3%		여